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243호
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.

2022년 5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성능시험대행자는”을 “성능시험대행자 및 자동차제작자 등은”으로, “기록·보관해야”를 “기록·보관해야 하며, 보존기간은 5년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규칙 제37조의2 제3항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표2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, 차대번호 등 그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8항 중 “인증서발행”을 “인증서발행, 인증표시”로 한다.

별표 10 (주)제3호 중 “3779:2007”을 “3779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술검토와 안전검사 세부 기준 및 방법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표에 기록·보관해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기술검토와 안전검사 세부 기준 및 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성능시험대행자 및 자동차제작자등은 ----- 기록 ----- 기록·보관해야 하며, 보존기간은 5년으로 -----.</u></p> <p>④ <u>규칙 제37조의2 제3항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표2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, 차대번호 등 그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6조(대체부품의 인증절차 등) ① ~ ⑦ (생략)</p> <p>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대체부품 인증신청, 심사, 인증시험, 인증서발행, 인증확인 및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 내용·절차 및 방법 등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.</p>	<p>제16조(대체부품의 인증절차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----- ----- <u>인증서발행, 인증표시</u>----- ----- -----.</p>